

**제2844호**  
2021. 7. 7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
편집인 :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 
전화 : 3396-4951  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의장
람	

# 구 보

●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1-513호 :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(안) 입법예고 ..... 2

● 고 시

제2021-87호 : 세운재정비축진지구 3-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..... 4

● 공 고

제2021-525호 :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..... 6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1 / FAX.(02)3396-9022/3  
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 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◎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513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 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 
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7월 7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.12.31.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안전한 도로 관리 및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(2026.12.31.)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(제1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도로시설과장, 전화 : 3396-6123, FAX : 3396-8839, E-mail : julialee27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이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도로시설과(☎3396-6123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: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〈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〉	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15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87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9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31호(2017.4.26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리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,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-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3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보입니다.

2021년 7월 7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75-1 일대

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4,983.4㎡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- 시 행 자 : 더센터시티제삼차(주) 대표 박래영

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, 12층

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1년 7월 7일

바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 수 (층)	높 이 (m)	용 도
3,813.4	2,242.12	58.8	47,495.01	874.78	지상20 /지하7	69.33	업무시설, 근생시설

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 급 계 획	공 대 급 상	건축시설(㎡)			
		업무시설		근린생활시설(문화및집회시설 포함)	
		대 면 적	건 축 연 면 적	대 면 적	건 축 연 면 적
계		3,499.99	43,591.61	313.41	3,903.41
토지등 소유자		351.61	4,379.27	313.41	3,903.41
일 용 반 납		3,148.38	39,212.34	-	-

3)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신 설				용도폐지			
종류	규모 (㎡)	설치 비용	관리청	종류	규모 (㎡)	국·공유지 (㎡)	무상양여 (㎡)
도로	658.90	8,053,540,672 시행자 부담	서울시 중 구	도로	732.8	732.8	726.8
공원	511.10	6,495,447,697 시행자 부담	서울시 중 구	-	-	-	-

사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

아. 관계서류 :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

## 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525호

##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

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등록번호	업체명	대표자	영업소 소재지	변경사항		
				구분	전	후
수질 -14호 대기 -5호 소음진동-2호	(주)대우건설	김*, 정항*	을지로 170, 에이동 (을지로4가)	대표자변경	김*	김*, 정항*

가. 공고기간 : 2021. 7. 9. ~ 2021. 7. 23. 까지

나. 공고방법 : 우리구 홈페이지에 전자 공시 및 구보게재. 끝.

2021. 7. 7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